EMBRAIN

2021년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공정거래위원회

2021.07

Contents

1.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개요
2.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진행 과정
3. 하도급 거래 설명

01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개요

1.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목적 및 배경
2. 하도급거래의 개념
3. 하도급법 적용 대상 및 제외 대상
4.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수행과정

1.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목적 및 배경

▪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란?

-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도급 법에 근거하여 매년 시행하고 있는 조사로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음.
  - 하도급 생태계의 현황 파악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시장/기업/관계적 특성을 조사하여 구체적인 하도급 생태계를 파악하는 기초 통계자료 구축
  - 다양한 거래 양상, 불공정 행위 조사 : 업종별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다양한 거래 양상과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여 거래주체 간 공정한 거래를 위한 정책 마련

사업 배경

- '하도급'은 그 업에 따른 일을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의 71%, 매출액 기준 83%의 비중으로 우리나라 산업 구조의 근간이 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원사업자에 의한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사회 이슈화가 되고 있음.
- 공정위는 표준하도급 계약서 제·개정 등 지속적인 노력 중이나 전체 사고건수 중 하도급 관련 건수는 40%대를 유지하고 있음.

지속적인 하도급 시장의 모니터링이 필요

법적 근거

- 하도급법 제22조의2
  - 공정위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함.

2. 하도급 거래의 개념

▪ 1. 하도급 거래란?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건설 등을 위탁하고, 수급사업자는 이를 수행하여 납품・인도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임. (법 제2조 제1항)
- 간단히 말하면, 어떤 회사가 그 회사보다 작은 회사에 외주를 준 경우임. 그 회사보다 큰 회사에 외주를 준 경우는 하도급이 아니며, 이 때의 규모 기준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 (건설업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정함)

- 도급 : 당사자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민법 제664조)

< 하도급 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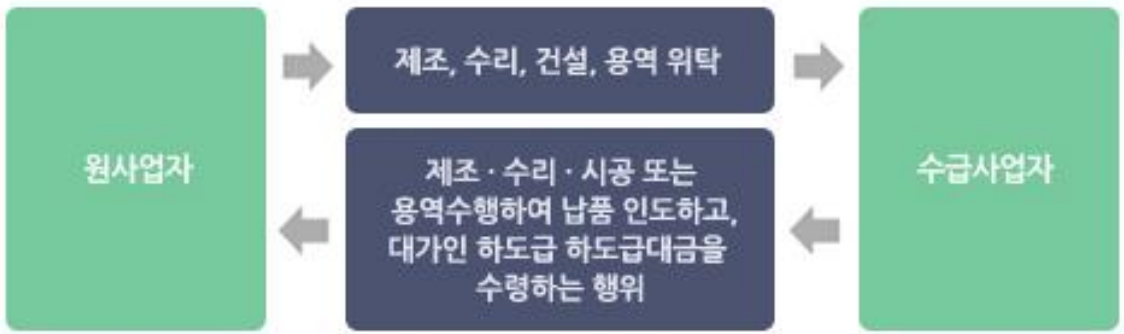

※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는
수리 위탁 제외

< 하도급 거래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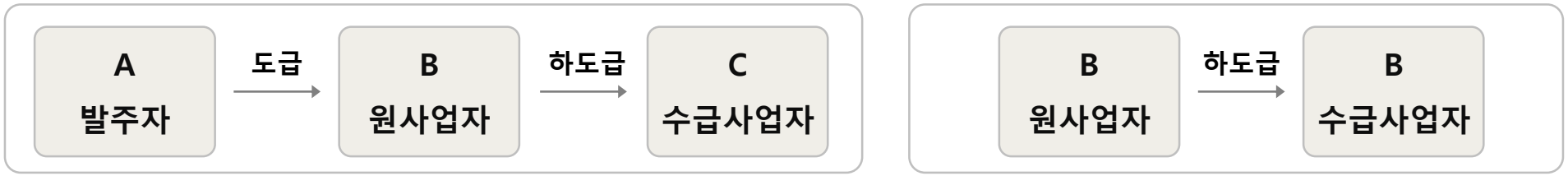

2. 하도급 거래의 개념

▪ 2. 하도급법 적용 대상 거래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 하도급법 적용 대상 거래 >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용역위탁	+	이것을 다시 위탁

※ 원사업자 자신의 업(業)에 따른 제조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할 것 (사업자간 위탁 행위)
※ 건설 분야의 경우 관련 면허 등 보유 사업자에게 위탁할 것 (단, 경미한 공사에 대한 예외 있음)
※ 업무 범위는 반드시 주된 사업 분야에 국한되는 것은 아님

3. 하도급법 적용 대상 및 제외 대상

▪ 하도급법 적용 제외 대상자

- 연간매출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사업자는 원사업자 대상에서 제외되고, 수급사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함.
- 2개 이상 업종 영위 시에도 업종 구분하지 않고, 합산한 매출액, 자산총액 기준을 판단하며 주된 업종은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으로 판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고,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기준에 맞아야 하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제외되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이 최다출자자로서 30%이상 지분 소유시 제외

< 하도급법 적용대상 사업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대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사 포함)	➡	중견기업(중소기업)
중소기업 직전사업년도 연간매출액 (건설 : 당해 연도 적용되는 시공능력평가액) > 수급 사업자	➡	중소기업

※ 법적용대상 사업자

- **원사업자 :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중소기업자)**
- **수급사업자 : 중견기업(중소기업)**

[하도급법상 대기업은 수급사업자가 될 수 없음]

※ 원사업자 대상제외('21.1.12. 이전 계약분까지)

- **제조** 위탁 : 연간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 **용역** 위탁 :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 **건설** 위탁 : 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 중소기업자(건설업) : 연간매출액 1,000억 원 이하 &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
* 중소기업자(제조업) : 연간매출액 1,500억 원(세부 업종별 차이 있음) 이하 &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

4.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수행과정

▪ 1. 수행과정

- 2021년도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는「원사업자 선정 」→「(원사업자)공문 및 조사표 발송」→「원사업자 조사」→「수급사업자 선정」→「(수급사업자)공문 및 조사표 발송」→「수급사업자 조사」→「결과 분석」→「자진시정 독려」의 단계의 과정을 거쳐 진행되며,
- 본 사업은 원사업자·수급사업자 조사의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의에 대한 대응을 위해 통합상담센터를 구축함.

수행 과정

원사업자 선정
- 업종별로 원사업자 표본 선정
- 업종
  - 제조업
  - 용역업
  - 건설업

→ **(등기 발송) 원사업자 조사**
- 선정된 대상 기업에게 등기를 발송
- 등기 내용
  - 공문 및 조사표
  - 안내 자료
  - 관리 및 접속코드 (로그인)

→ **수급사업자 선정**
- 선정된 원사업자가 조사표에 작성하여 제출한 수급사업자 데이터를 이용하여 조사 대상 기업 선정
- 업종 (원사업자와 동일)

→ **(등기 발송) 수급사업자 조사**
- 선정된 수급사업자 대상 기업에 등기를 발송
- 등기 내용 (원사업자와 동일)

→ **자진 시정 독려**
- 조사 결과 하도급법 위반 혐의 사업자 검출
- 자진시정 촉구

→ **자료 취합 및 분석** → **국가통계포털 등록**

조사 결과를 토대로 통계DB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등록

4.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수행과정

▪ 2. 조사내용 및 시기

-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위탁 종류 및 업종별로 원사업자 표본을 선정하고,
  원사업자로부터 제출 받은 수급사업자 명단 대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조사하며, 조사 기간은 아래와 같이 진행됨.

조사 시기

- 조사 시기 : 2021년 7월 ~ 10월
  - **원사업자 조사 기간 : 7월 26일 ~ 8월 20일**
    (수급사업자 선정 : 8월 30일 ~ 9월 10일)
  - **수급사업자 조사 기간 : 9월 16일 ~ 10월 13일**

조사 기간 중
통합상담 지원센터 운영

조사 대상

구분	제조업	용역업	건설업	계
원사업자	7,000	2,500	500	10,000
수급사업자	63,000	22,500	4,500	90,000

조사 내용

- 조사 내용 : 2020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의 하도급 거래 현황 등 (업종별 상이)

분야	조사 내용
하도급 거래 현황	• 하도급 업체수, 하도급 거래금액 • 수급사업자 선정방식, 결제수단별 거래규모 • 계약서면 교부 실태, 표준계약서 사용 현황 등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혐의 실태	•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 단가인하 실태 • 위탁취소·변경 • 기술자료 요구·유용행위, 경영간섭행위 실태 등
전속거래·PB 제품 분야 하도급 거래실태	• 전속거래 여부 및 목적 • 전속거래 기간·업체 수 • PB 분야 하도급법 위반혐의 실태 등
최근 하도급법에 도입된 제도에 대한 인지도 조사	• 3배 손해배상 제도 •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 • 신고포상금 지급제도 • 기술탈취 행위 시효 연장 등
만족도 조사	• 하도급거래상황 개선도 • 하도급정책 만족도 등

02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진행 과정

1.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등기 발송
2.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홈페이지

1.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등기 발송

▪ 0. 등기 발송 형태

- 조사 대상 원사업자에게 등기를 발송함.
- 등기는 1. 조사 홈페이지, 관리번호, 접속코드와 기업명이 적혀있는 표지와 2. 공문, 3. 실태조사 입력과 전송 방법, 조사표 입력시 유의사항 안내문, 4. 업종별 설문지가 발송됨. (건설의 경우 5. 안내책자가 추가로 발송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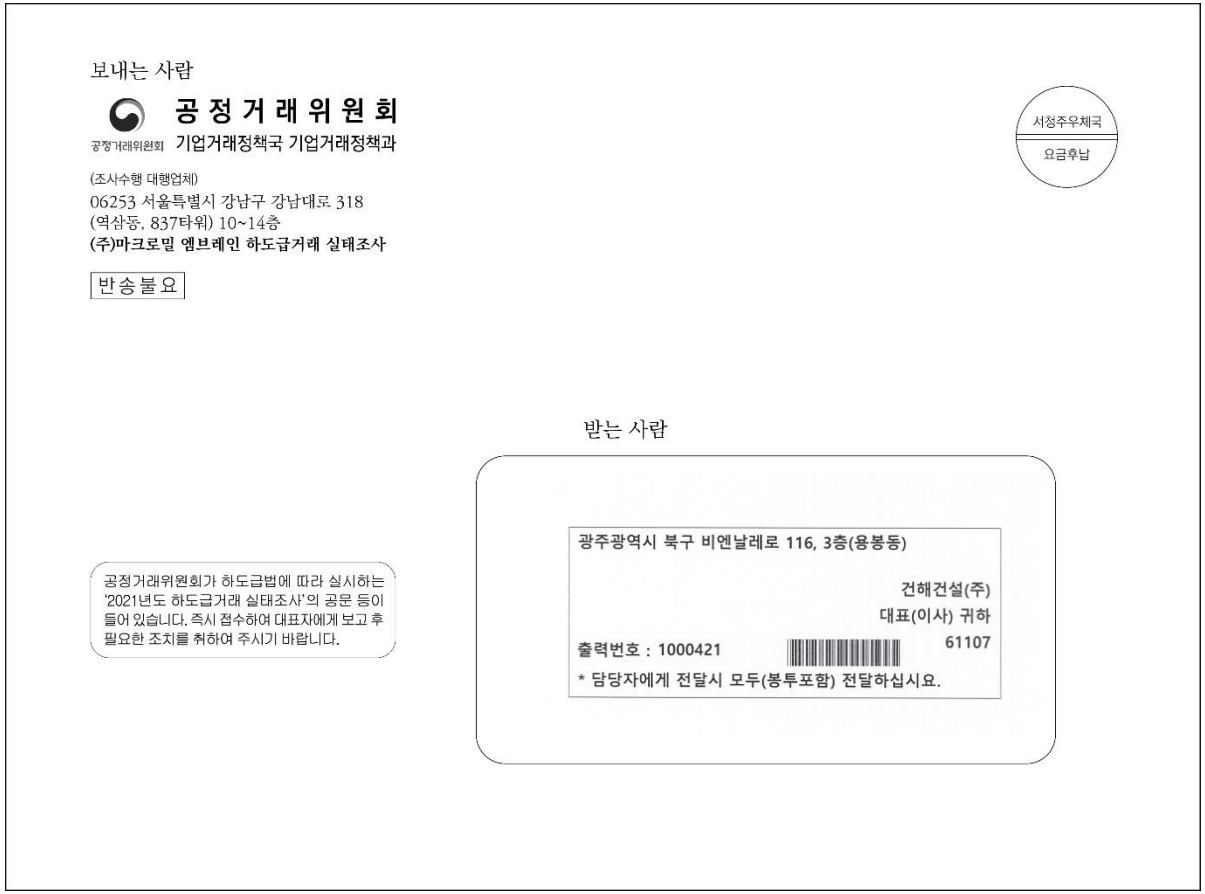

1.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등기 발송

▪ 1. 등기 표지

- 첫 페이지에는 홈페이지와 기업별로 부여된 관리번호와 접속코드가 기재되어 있음. (봉투에서는 기업명과 주소만 보임)
- 기업은 관리번호와 접속코드를 이용해 조사 홈페이지에 로그인 할 수 있음.

※ 봉투 오픈시에 접속코드 확인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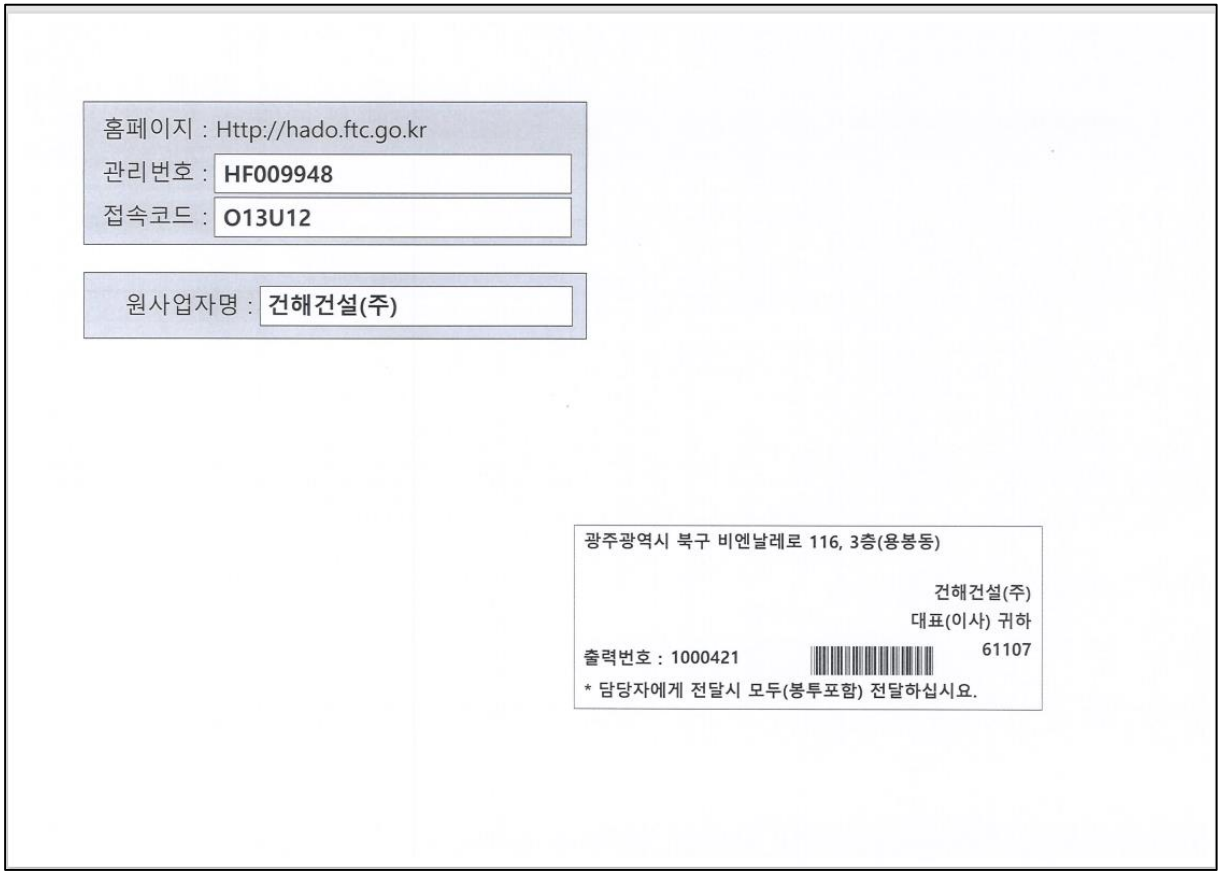
홈페이지 : Http://hado.ftc.go.kr
관리번호 : HF009948
접속코드 : O13U12

원사업자명 : 건해건설(주)

광주광역시 북구 비엔날레로 116, 3층(용봉동)

건해건설(주)
대표(이사) 귀하

출력번호 : 1000421 61107

* 담당자에게 전달시 모두(봉투포함) 전달하십시요.

1.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등기 발송

▪ 2. 조사 공문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보내는 공문이 첨부되어 있음.
- 공문 안에는 **제출 방법, 조사 기간, 주의사항, 상담센터번호** 등이 안내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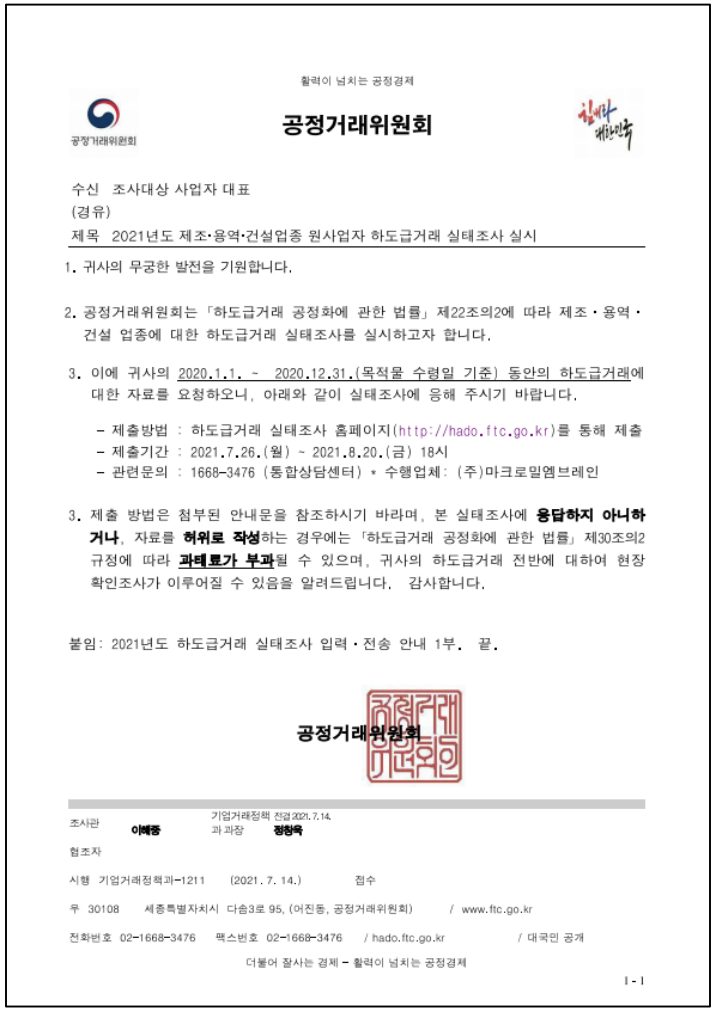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공정거래위원회

수신 조사대상 사업자 대표
(경유)
제목 2021년도 제조·용역·건설업종 원사업자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실시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제조·용역·건설 업종에 대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3. 이에 귀사의 2020.1.1. ~ 2020.12.31.(목적물 수령일 기준) 동안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오니, 아래와 같이 실태조사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홈페이지(http://hado.ftc.go.kr)를 통해 제출
- 제출기간 : 2021.7.26.(월) ~ 2021.8.20.(금) 18시
- 관련문의 : 1668-3476 (통합상담센터) * 수행업체 : (주)마크로밀엠브레인

3. 제출 방법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실태조사에 **응답하지 아니하거나**,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귀사의 하도급거래 전반에 대하여 현장 확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2021년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입력·전송 안내 1부. 끝.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 전결 2021.7.14.
조사관 이혜종 과 과장 정창욱
협조자
시행 기업거래정책과-1211 (2021. 7. 14.) 접수
우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어진동, 공정거래위원회) / www.ftc.go.kr
전화번호 02-1668-3476 팩스번호 02-1668-3476 / hado.ftc.go.kr / 대국민 공개
더불어 잘사는 경제 –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1 - 1

*** 공문 하단의 전화/Fax번호 02-1668-3476은 실제 연결되지 않습니다. (본문에 기재된 1668-3476으로 연결해야함)**

1.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등기 발송

▪ 3. 조사 입력 및 전송 안내문

- 조사표 입력(작성) 및 전송 방법과 입력 시 유의사항이 안내되어 있음. (조사 제외 대상 및 관련 증빙자료 등)
- 관련하여 문의할 통합상담센터 대표번호와 카카오톡 상담톡 연결 QR코드가 안내되어 있음.

2021년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입력·전송 안내

입력 및 전송 방법

1. **홈페이지 접속**(https://hado.ftc.go.kr) 또는 포털사이트에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검색하여 접속
2. **로그인** (관리번호 및 접속코드 입력)
   ※ 관리번호 및 접속코드는 귀사의 주소가 적혀있는 용지 상단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3. 홈페이지 메뉴 중 **"조사안내" 란 내용 숙지** 후
4. 아래 작성 순서에 따라 조사표 작성
   회사개요 → 하도급 거래현황 → 수급사업자 명부 입력 및 작성
5. 조사표 입력이 완료 되면, 반드시 "조사표 전송" 메뉴를 통하여 **"조사표 전송 실행"을 클릭**

※ **「전송이 완료 되었습니다.」**가 나오면 조사표 작성 및 전송이 완료 된 것입니다.

-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관련 문의는 통합상담센터 (**1668-3476**) 또는 **카카오톡 상담톡**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우측 QR코드를 스캔하면 카카오톡 상담톡으로 연결됩니다.

카카오톡 상담톡 연결

※ **조사표는 반드시 다음 「유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표 입력 시 유의사항

1.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홈페이지(http://hado.ftc.go.kr)에 로그인을 하신 후, 먼저 "조사안내"란에 있는 「유의사항」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 조사표를 **허위작성(입력)** 또는 **미제출**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에 의한 **처분(과태료 부과)**을 받을 수 있으며, 귀사의 하도급거래 전반에 대하여 현장 확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다음의 경우는 조사 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① **「2. 회사 개요」 부분까지 입력**하고, ② 조사제외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PDF파일)를 사이트에 업로드**하신 후, ③ **<조사표 전송> 메뉴를 실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조사제외 대상으로 자료를 제출하신 경우, 제출 자료의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후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조사 제외대상 사유	관련 증빙자료(제출해야 할 자료)
① '원사업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2019년도 손익계산서[제조·용역업종] · 2020년도 시공능력평가액[건설업종]
② 하도급거래가 없거나 하도급을 받기만 하는 경우	· 귀사의 거래내용(품목) 및 거래형태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소명자료(별도 양식 없음) · 원료구입부터 제품완성 및 포장까지의 생산공정 프로세스 등 사업내용을 포함하여 설명
③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또는 기업개선작업(work-out)이 진행 중인 경우	· 회생절차 개시결정 관련 법원판결문 또는 기업개선작업이 진행 중임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
④ 부도나 영업중단 또는 폐업한 경우	· 부도사실 확인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등
⑤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된 경우	· 합병관련 계약서, 법인등기부 등본 등

4.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업체로서 사업장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에서 취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입력완료 후 반드시 **「5. 조사표 전송」** 화면에서 **전송버튼을 클릭하여야** 조사표 제출이 완료됩니다. **조사표를 전송**하기 전 반드시 **대표이사의 확인**을 거친 후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6. 조사표 작성 책임자는 사실조회 및 확인을 위하여 전송한 조사표 내용을 반드시 **출력하여 보관**하여 주십시오.

1.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등기 발송

▪ 4. 업종별 조사표

- 업종별로 작성해야 할 설문지가 서면으로 첨부되어 있음. (업종별 상이)
- 서면으로 설문지는 첨부되어 있지만 입력은 온라인으로 해야 함.

[제조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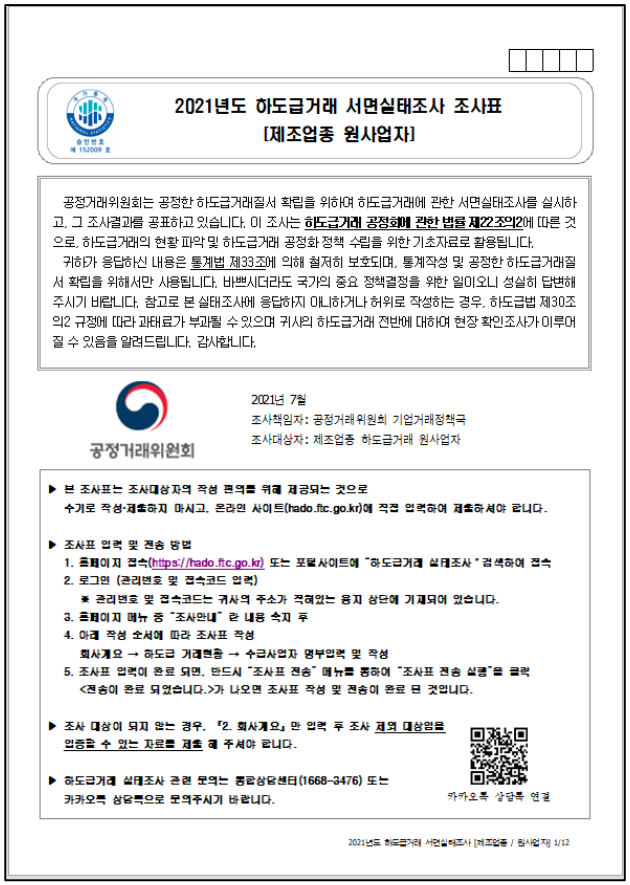

2021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조사표
[제조업종 원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것으로, 하도급거래의 현황 파악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귀하가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통계작성 및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바쁘시더라도 국가의 중요 정책결정을 위한 일이오니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실태조사에 응답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하도급법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귀사의 하도급거래 전반에 대하여 현장 확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2021년 7월
조사책임자: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조사대상자: 제조업종 하도급거래 원사업자

▶ 본 조사표는 조사대상자의 작성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수기로 작성·제출하지 마시고, 온라인 사이트(hado.ftc.go.kr)에 직접 입력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조사표 입력 및 전송 방법
1. 홈페이지 접속(https://hado.ftc.go.kr) 또는 포털사이트에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검색하여 접속
2. 로그인 (관리번호 및 접속코드 입력)
※ 관리번호 및 접속코드는 귀사의 주소가 적혀있는 용지 상단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3. 홈페이지 메뉴 중 "조사안내" 란 내용 숙지 후
4. 아래 작성 순서에 따라 조사표 작성
회사개요 → 하도급 거래현황 → 수급사업자 명부입력 및 작성
5. 조사표 입력이 완료 되면, 반드시 "조사표 전송" 메뉴를 통하여 "조사표 전송 실행"을 클릭 <전송이 완료 되었습니다.>가 나오면 조사표 작성 및 전송이 완료 된 것입니다.

▶ 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2. 회사개요」만 입력 후 조사 제외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해 주셔야 합니다.

▶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관련 문의는 통합상담센터(1668-3476) 또는 카카오톡 상담톡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상담톡 연결

2021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제조업종 / 원사업자] 1/12

[용역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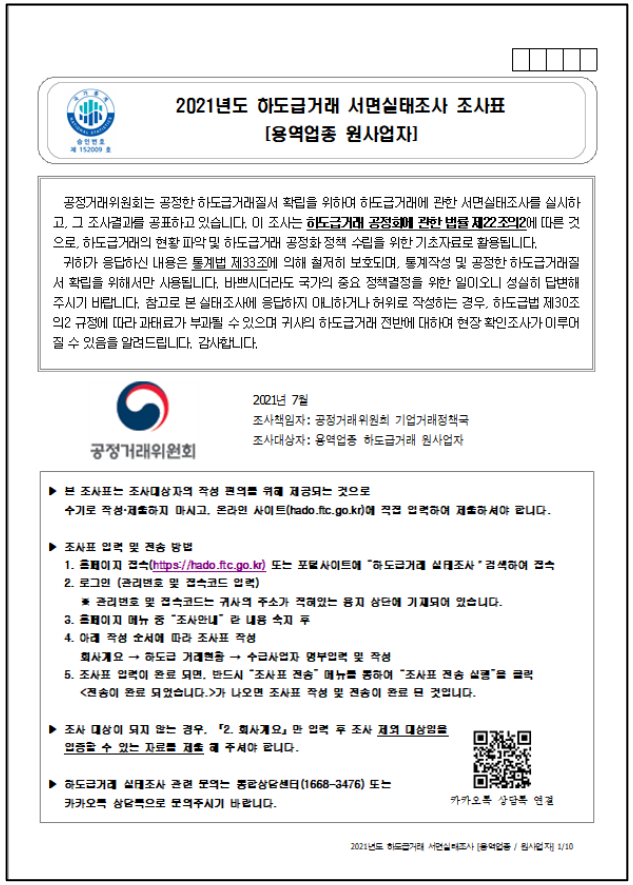

2021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조사표
[용역업종 원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것으로, 하도급거래의 현황 파악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귀하가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통계작성 및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바쁘시더라도 국가의 중요 정책결정을 위한 일이오니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실태조사에 응답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하도급법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귀사의 하도급거래 전반에 대하여 현장 확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2021년 7월
조사책임자: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조사대상자: 용역업종 하도급거래 원사업자

▶ 본 조사표는 조사대상자의 작성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수기로 작성·제출하지 마시고, 온라인 사이트(hado.ftc.go.kr)에 직접 입력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조사표 입력 및 전송 방법
1. 홈페이지 접속(https://hado.ftc.go.kr) 또는 포털사이트에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검색하여 접속
2. 로그인 (관리번호 및 접속코드 입력)
※ 관리번호 및 접속코드는 귀사의 주소가 적혀있는 용지 상단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3. 홈페이지 메뉴 중 "조사안내" 란 내용 숙지 후
4. 아래 작성 순서에 따라 조사표 작성
회사개요 → 하도급 거래현황 → 수급사업자 명부입력 및 작성
5. 조사표 입력이 완료 되면, 반드시 "조사표 전송" 메뉴를 통하여 "조사표 전송 실행"을 클릭 <전송이 완료 되었습니다.>가 나오면 조사표 작성 및 전송이 완료 된 것입니다.

▶ 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2. 회사개요」만 입력 후 조사 제외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해 주셔야 합니다.

▶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관련 문의는 통합상담센터(1668-3476) 또는 카카오톡 상담톡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상담톡 연결

2021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용역업종 / 원사업자] 1/10

[건설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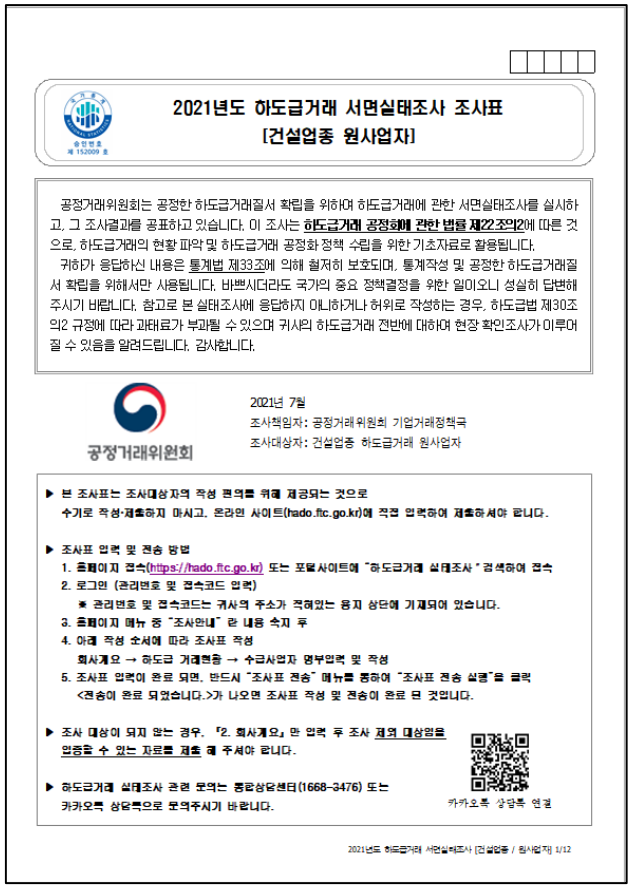

2021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조사표
[건설업종 원사업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것으로, 하도급거래의 현황 파악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귀하가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통계작성 및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바쁘시더라도 국가의 중요 정책결정을 위한 일이오니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실태조사에 응답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하도급법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귀사의 하도급거래 전반에 대하여 현장 확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2021년 7월
조사책임자: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조사대상자: 건설업종 하도급거래 원사업자

▶ 본 조사표는 조사대상자의 작성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수기로 작성·제출하지 마시고, 온라인 사이트(hado.ftc.go.kr)에 직접 입력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조사표 입력 및 전송 방법
1. 홈페이지 접속(https://hado.ftc.go.kr) 또는 포털사이트에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검색하여 접속
2. 로그인 (관리번호 및 접속코드 입력)
※ 관리번호 및 접속코드는 귀사의 주소가 적혀있는 용지 상단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3. 홈페이지 메뉴 중 "조사안내" 란 내용 숙지 후
4. 아래 작성 순서에 따라 조사표 작성
회사개요 → 하도급 거래현황 → 수급사업자 명부입력 및 작성
5. 조사표 입력이 완료 되면, 반드시 "조사표 전송" 메뉴를 통하여 "조사표 전송 실행"을 클릭 <전송이 완료 되었습니다.>가 나오면 조사표 작성 및 전송이 완료 된 것입니다.

▶ 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2. 회사개요」만 입력 후 조사 제외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해 주셔야 합니다.

▶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관련 문의는 통합상담센터(1668-3476) 또는 카카오톡 상담톡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상담톡 연결

2021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건설업종 / 원사업자] 1/12

2.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홈페이지

▪ 1. 메인페이지

- 등기우편의 표지에 적혀있는 기업별로 부여된 관리번호와 접속코드를 이용하여 로그인이 가능함.
- 홈페이지에는 조사참여기간과 통합상담센터 연결 방법 등이 안내되어 있음. (상담센터 대표번호 1668-3476, 카카오톡 상담 QR코드)
- 그 외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홍보영상과 불공정 거래 신고 란이 있음. (불공정 거래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 제보센터로 연결됨)

2.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홈페이지

▪ 2.「1. 조사 안내 」탭

- 조사에 대한 유의사항도 확인할 수 있고, 우측 하단의 다음 단계 탭을 누르면 다음 탭으로 자동 넘어가게 됨.
- 조사표 작성 책임자는 사실조회 및 확인을 위해 전송한 조사표 내용을 반드시 출력하여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매 페이지마다 우측 하단에 [화면 인쇄하기] 버튼이 있음.

[1. 조사안내 탭 – 웹 화면 캡쳐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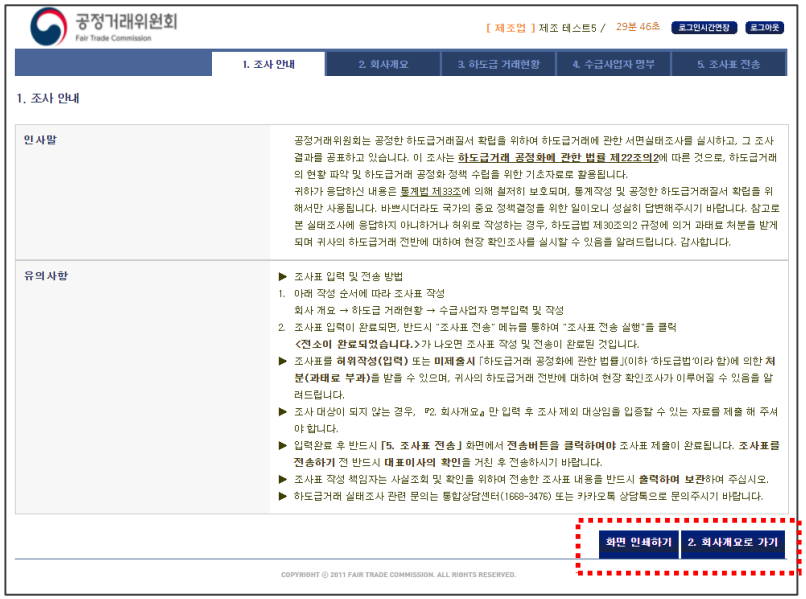

[유의사항]

유의사항 카카오톡 상담톡 연결	▶ 조사표 입력 및 전송 방법 1. 아래 작성 순서에 따라 조사표 작성 회사개요 → 하도급 거래현황 → 수급사업자 명부입력 및 작성 2. 조사표 입력이 완료 되면, 반드시 "조사표 전송" 메뉴를 통하여 "조사표 전송 실행"을 클릭 **<전송이 완료 되었습니다.>**가 나오면 조사표 작성 및 전송이 완료 된 것입니다. ▶ 조사표를 **허위작성(입력)** 또는 **미제출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에 의한 **처분(과태료 부과)**을 받을 수 있으며, 귀사의 하도급거래 전반에 대하여 현장 확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2. 회사개요』만 입력 후 조사 제외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해 주셔야 합니다. ▶ 입력완료 후 반드시 **「5. 조사표 전송」** 화면에서 **전송버튼을 클릭하여야** 조사표 제출이 완료됩니다. **조사표를 전송하기** 전 반드시 **대표이사의 확인**을 거친 후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 조사표 작성 책임자는 사실조회 및 확인을 위하여 전송한 조사표 내용을 반드시 **출력하여 보관**하여 주십시오. ▶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관련 문의는 통합상담센터(1668-3476) 또는 카카오톡 상담톡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홈페이지

▪ 3.「2. 회사개요」탭

- 회사개요 페이지에는 조사 제외 대상과 그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있음.
- 제출해야 하는 증빙자료는 회사개요 탭의 [조사제외 대상 증빙자료] 란에서 업로드(PDF)가 가능함.
- 이후 문항마다 어떻게 응답하면 되는지 [응답 가이드]를 확인할 수 있음.

[2. 회사개요 탭 – 웹 화면 캡쳐본]

[조사제외 대상 증빙자료 란]

조사제외 대상 증빙자료	▣ 조사제외 대상이 되시는 경우 조사제외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PDF 파일)를 업로드** 해 주시기 바랍니다. **Step1. 제외대상 항목 선택 (택1)** ① '원사업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하도급거래가 없거나 하도급을 받기만 하는 경우 ③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또는 기업개선작업(work-out)이 진행 중인 경우 ④ 부도나 영업중단 또는 폐업한 경우 ⑤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된 경우 **Step2. 파일 업로드** (제외대상 증빙자료 업로드) **Step3. 회사개요 입력 및 내용 저장 후 「3. 하도급거래상황」의 5번문항 (하도급거래형태) 응답, 「5. 조사표전송」으로 이동하여 조사표 전송**

2.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홈페이지

▪ 4.「4. 수급사업자 명부」탭

- (3. 하도급 거래상황) 탭을 모두 작성한 후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를 한 수급사업자의 명부를 업로드 해야 함.
- 엑셀 형태의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업로드 하는 형태로 제출하게 되어 있음.

[4. 수급사업자 명부 탭 – 웹 화면 캡쳐본]

2.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홈페이지

▪ 5.「5. 조사표 전송」탭

- 조사표 전송 탭에서는 어떤 탭의 조사표를 작성 완료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고, [조사표 전송 실행] 버튼을 누르면 전송이 완료됨.
- 조사표 전송을 하기 전에는 수정이 가능하나 전송을 완료하면 원칙적으로는 수정이 불가함.
- 우측 하단의 [조사표 전송 확인] 버튼을 누르면 작성한 입력값과 전송여부를 확인 할 수 있음.

[5. 조사표 전송 탭 – 웹 화면 캡쳐본]

[작성 현황] 미작성시 / 작성 완료시 (전송가능)

[조사표 전송 확인 팝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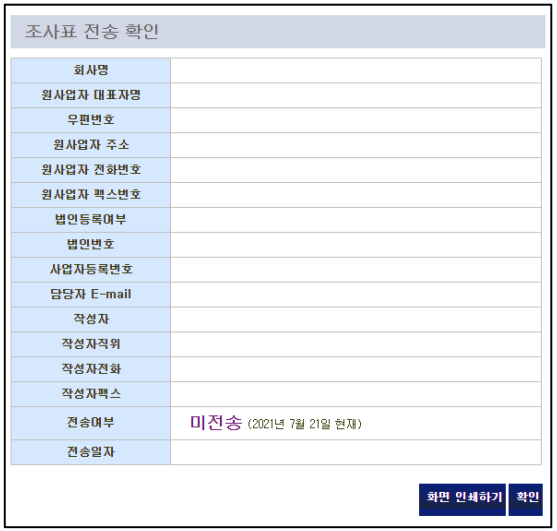

2.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홈페이지

▪ 6. 조사표 작성 시 문의사항 발생시 통합상담센터로 문의

- 조사표 작성 담당자가 조사 안내나 조사표 작성에 관련하여 문의할 부분이 생기면 통합상담센터나 QR코드로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신청 가능

03 하도급 거래 설명

1. 하도급거래 종류
2. 하도급거래 사례
3. 하도급거래 관련 현장조사
4. 위반행위 자진시정에 대한 면책제도

1. 하도급거래 종류

- **1. 건설위탁**

- **건설업자가 그 업(業)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 대상 : 건설업자가 시공 자격 있는 공종(자격 없는 부대공사 포함)을 자격 있는 다른 건설업자에게 시공 위탁한 경우 등

  * 제외 : 건설업자가 시공 자격 없는 건설업자, 무등록 무면허업자, 시공참여자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경우

- **경미한 공사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도 법 적용**

  * 업(業)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

< 건설 위탁 행위 사업자>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등록자
5. 주택법에 따른 등록사업자
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등록업자
7.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업자
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등록업자
9.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시공사
1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시공자

< 경미한 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 일반건설공사는 5천만원 미만, 전문건설공사는 1천 5백만원 미만 공사
- 접속기, 소켓, 기타 개폐기 보수 및 교환 공사 등

< 건설위탁이 아닌 경우 > (예시)

- 무면허건설업자와의 거래 (경미한 공사는 제외)
- 전기공사업 면허사업자가 해당 면허가 없는 전문건설업자와 거래
- 건설장비임대차(포크레인 등)

1. 하도급거래 종류

- **2. 제조위탁**

- **물품의 제조(가공 포함)·판매·수리업자, 건설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 대상 : 사양을 지정 주문한 완제품, 부품, 반제품, 금형, 포장용기, 라벨, 임가공 등

< 제조 위탁 행위 사업자>

1. **물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
2. **물품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
3. **물품의 수리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
4. **건설업자**

< 제조위탁이 아닌 경우 >

- **물품의 제조, 판매, 건설업자 외 다른 사업자가 물품의 제조극 위탁**
- **업(業)과 관련 없는 위탁(자가소비용 단순구매)**
- **위탁 받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위탁하지 않고 단순구매하여 납품**
- **물품의 생산을 위한 기계, 장비, 설비의 제조위탁**

- 업(業)으로 한다는 의미는 "경제적 대가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해당 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
-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 등에서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고 있음

1. 하도급거래 종류

- **2. 제조위탁**

- 제조위탁에 해당하는 경우 (제조/판매업자)

- 제조・판매・수리의 대상이 되는 완제품(주문자상표부착방식 제조 포함)을 제조위탁하는 경우
- 물품의 제조・수리 과정에서 투입되는 중간재(원재재, 부품, 반제품 등)를 규격 또는 품질 등을 지정하여 제조 위탁하는 경우
- 물품의 제조에 필요한 금형, 사형, 목형 등을 제조위탁하는 경우
- 물품의 제조과정에서 도장, 가공, 조립, 주단조, 도금 등을 위탁하는 경우
- 물품의 제조나 판매에 부속되는 포장용기, 라벨, 견본품 및 사용안내서 등을 제조위탁하는 경우

- 제조위탁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업자)

- 건설(건축)공사에 소요(설치)되는 자재, 부품 또는 시설물 등을 규격 또는 성능 등을 지정한 도면, 설계도, 시방서 등에 따라 주문 제작한 것

  (표지판, 엘리베이터, 레미콘, 모델하우스, 주방가구, 신발장, 가드레일, 표지판, 밸브, 갑문, 엘리베이터 등)

1. 하도급거래 종류

- **3. 수리위탁**

- 사업자가 주문을 받아 물품을 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거나 자기가 사용하는 물품을 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 그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 수리 위탁 행위 사업자>

※ 수리사업자가 그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수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차량수리업자가 차량의 수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선박수리업자가 선박의 수시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발전기 수리업자가 발전기의 수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제조/판매사업자가 설비의 수리행위를 위탁하는 경우 >

- **수리사업자가 아니므로 하도급법상 수리위탁에 해당하지 않음**

1. 하도급거래 종류

▪ 4. 용역위탁

-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 지식성과물 : 소프트웨어 등 정보프로그램, 영화, 방송프로그램, 설계 등 (주로 유형적)
- 역무 : 엔지니어링 활동, 화물자동차운수, 건물유지관리, 경비, 광고 편집·현상·녹음 등 (주로 무형적)

[지식정보 성과물의 작성 위탁]

1.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작성 위탁
2. 영화, 방송프로그램, 영상광고 등의 제작 위탁
3.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도서 작성 위탁
4.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상 엔지니어링활동 중 설계위탁 등

※ 용역위탁은 동일 업종 간의 위탁만을 인정하는 점에서 건설위탁과 유사하나 관련 법에서 엄격한 등록, 면허를 요구하지 않음

[역무의 공급 위탁]

1. 엔지니어링 활동을 업으로 하는 자가 구조계산, 감리, 시설물유지관리를 위탁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수사업자가 화동자동차를 이용한 화물의 운송 또는 화물운송의 주선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
3. 건축법상 건축물의 유지, 관리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건축물의 유지, 보수, 청소를 위탁
4. 경비를 업으로 하는 자가 시설 내 위험방지, 신변보호 활동을 위탁
5. 물류를 업으로 하는 자가 화물 운송, 보관, 포장 활동을 위탁
6. 소프트웨어사업을 업으로 하는 자가 시스템 통합, 운영, 유지, 보수를 위탁 / 데이터 저장, 검색 등을 위탁
7. 광고를 업으로 하는 자가 판촉, 편집, 조사, 기획 등을 위탁
8. 방송, 영상제작, 영화제작, 공연기획을 업으로 하는 자가 녹음, 촬영, 편집 등을 위탁
9. 분양사업자가 건축물 분양 업무를 위탁

2. 하도급거래 사례

▪ 하도급법 적용 대상 거래 사례

"사례1. 다음은 하도급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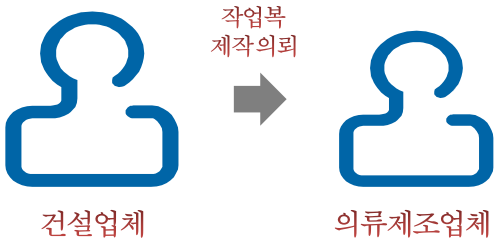

건설업체의 '업'은 작업복 제작이 아니므로 하도급 거래가 아님!

"사례2. 수급사업자가 무등록 사업자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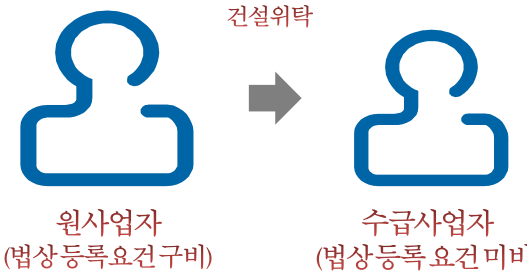

'업에 따른 사업자간' 거래가 아니므로 하도급 거래가 아님!

"사례3. 제조위탁과 단순구매를 구분하는 기준은?"

사양을 지정 주문하였는지,
규격 또는 품질을 지정하였는지?

↓

자가소비용 단순구매나 위탁 받은 목적물을
단순 구매하여 납품하는 경우는 제조위탁이 아님!

"사례4. 외국에서 수입한 물품을 그대로 납품하는 거래의 경우?"

수입한 물품을 그대로 납품하는 경우

↓

제조위탁이 아닌 단순구매에 불과하여 하도급거래라 할 수 없음.
다만, 수입한 물품을 목적물의 일부로 사용했거나 가공을 한 경우에는
제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하도급법상 제조위탁에 해당할 수 있음

3. 하도급거래 관련 현장조사

- **실태조사 관련 현장조사는 다음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음. (원사업자)**

- **조사표를 미제출**한 사업자
- **하도급거래가 없다고 응답**한 사업자
- 법 위반 **자진시정결과(소명자료) 미제출** 사업자
- 법 위반 자진시정결과 **법 위반 혐의를 불인정**한 사업자
- **허위, 축소** 자진시정 및 **탈법행위** 혐의 사업자
- 법 위반 자진시정결과 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였으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자진시정을 하지 못한 사업자**

➔ 현장조사 결과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이외 상습적 법 위반시 기업명 게시 및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원사업자 서면실태조사 진행 → 수급사업자 선정 및 조사 → 실태조사 결과 분석 → 시정공문 발송 및 자진시정 입력 → 현장조사

4. 위반행위 자진시정에 대한 면책제도

- **원사업자가 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 할 경우 그 시기 및 내용에 따라 제재 조치를 면제함.**

• 공정위 조사개시 **전** 자진시정한 경우

→ 조사 개시 전 법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고 수급자에 대한 피해 구제까지 완료한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한 모든 제재조치가 면제

• 공정위 조사개시 **후** 자진시정한 경우

→ 조사개시 후 30일 이내에 자진시정(대금 미지급행위에 한정)하면 벌점 부솨 조치가 면제되며, 과징금 부과도 면제

* 다만, 제도의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3년간 대금 미지급 전력이 3회 이상인 사업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